

## 수출신고 시 수출거래 구분 및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방법 문의

Q

수출거래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상황 : 국내고객과 판매계약, 물품대금도 국내고객으로 부터 수령 예정  
국내고객에서 물품 배송은 본인들 해외 법인으로 배송을 요청함
2. 우리회사에서 고객의 해외법인으로 배송할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요? (92-무상? or 11-일반형태 수출? or 다른 코드?)
3. 국내고객에게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4. 그리고 수익인식시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선적일자인지? 아니면 임의의 다른일자로 가능한지?
5. 영세율이 맞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근거자료로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 6, 영세율이 맞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서 어떤 조문의 어떤 내용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A

1. 수출신고 거래구분은 내국세와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며 관세문제이므로 저희가 아닌 관세청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국내고객과의 거래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화 공급시점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다른데, 선적시점(인도일)이 일반적인 공급시기에 해당됩니다.

## 회사 출입구 번호인식시스템(주차차단기) 비용귀속부서 문의

Q

회사 출입구 번호인식시스템(주차차단기)과 CCTV 설치에 대해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용귀속부서 판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 회사 공통으로 사용됨에 따라 공장전체의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관리비를 매출원가로 넣어 야하는지
- 2)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하는지

회사 출입구 번호인식시스템의 비용귀속은 세법이나 회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귀사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는데, 매출원가보다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 Q**
1. 실질적으로 명확히 수출에 해당할 경우,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구매확인서 금액이 영세율 공급가액보다 클 경우, 차이 조정이 필요한지?

- A**
1.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이 없으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구매확인서 금액과 차이가 발생되어도 차이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의

- Q**
- 2021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2.14 이전에는 일당 0.025% 의 요율, 그리고 그 이후에는 0.022% 의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 ①'22.04.01~'24.02.13 → 0.025%, ②'24.02.14~'24.9. 신고일까지 → 0.022%
- 이 경우 ①, ②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될런지 아니면 전체 기간(20'4/1~신고일까지)에 대해 0.025%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A**
-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4호.2022.02.15)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